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9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0. 29.
3. 회부연월일 : 2025.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전문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설 설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내용의 예시에 자궁심 고취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추가하고, 소방청장에게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u>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u>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 ----- ----- <u>자궁심 고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 등의 교육</u> ----- --.
<신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¹⁾>

○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²⁾

○ 임 무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각종 행사장 안전지원 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³⁾	
전문 의용소방대 ⁴⁾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 의용소방대 ⁵⁾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2024.12.31. 기준):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자료: 소방청)

1)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또한,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면서(제10조), 의용소방대원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역의용소방대도 일반의용소방대(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와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남성, 여성 또는 혼성으로 구성됨. 소방청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밑에 하위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데, 지역의용소방대는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와 함께 활동함.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5)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하고 있음(제13조).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규정⁶⁾을 살펴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⁷⁾에 대하여는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 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연간 24시간 이상),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기본교육 36시간(2년간 / 연 18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연 12시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의용소방대원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 모두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청렴교육, 리더쉽 이론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소양 교육과 화재진압, 소방시설, 구조활동, 구급활동 등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6,244회에 걸쳐 477,03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교육은 주로 119안전센터⁸⁾, 소방서 등에서 이루어졌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7)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8) 소방기관 중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활동과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 바로 아래의 최하단 소방기관임.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제도 개요⁹⁾>

○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시간

- 전담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시(연간 24시간)
- 신규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기본교육 36시간(2년간 / 연 18시간)
-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연 12시간

○ 교육내용

- 기본교육

교과목(기본교육)	교육내용
화재의 성상	연소이론, 화재 및 소화이론, 화재 시 행동패턴
소방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 옥내·옥외소화전 사용법,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사용법
응급처치	응급처치 개요 및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질환) 기본 응급처치(사고)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구조활동 개요, 피난구조장비 사용법 생활안전활동 유형과 활동요령
현장활동 안전관리	안전사고의 개념, 현장활동 안전관리 안전사고 발생사례
소양교육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성인지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용소방대 비위 사례

- 전문교육

교과목(전문교육)	교육내용
화재진압실무	생활 속 화재예방
	화재 대피와 피난, 화재진압이론,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장비의 사용(통신장비 포함)
	특수화재 대응
	산불의 예방과 감시, 산불진압 이론과 실습
현장안전관리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특성
	화재현장, 교통사고 안전관리
	수난사고, 인파사고 안전관리
	소방활동 안전관리지침
구조활동	교통사고와 구조활동
	지진, 특수사고와 구조활동
	인명구조 실습-개인 및 팀단위

교과목(전문교육)	교육내용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대의 유형 및 활동장비, 생활안전활동 실습				
구급활동	환자 이송체계 이해				
	외상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다수사상자 발생시의 환자분류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소양교육	성인지 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용소방대 비위사례				
	리더쉽 이론과 실제, 교수능력 향상				

○ 2024년도 교육훈련 현황: 총 126,244회 / 477,038명 교육

구분	안전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횟수(회)	20,973	2,026	384	383	4
인원(명)	326,840	58,504	4,482	1,459	9

구분	소방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횟수(회)	659	2,338	99,364	113
인원(명)	4,232	50,429	30,966	117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내용의 예시에 자긍심 고취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추가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방청장에게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전문적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것임.

9)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개정안
의용소방대원 교육내용	-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	-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 자긍심 고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 등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시설	-	- 설치 근거 신설

개정안의 내용 중 의용소방대원의 교육내용 예시를 법률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원 교육내용의 예시에 “자긍심 고취 교육,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다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임.

다만,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등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모든 교육의 기본 목적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3,979개 의용소방대에 92,484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총 270,137회에 걸쳐 화재 및 구조·구급 현장 등에서 소방대 활동을 보조하면서 임무 수행 중 1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었고,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훈련은 대체로 소속 관할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화재 현장을 재현한 실화재훈련 시설 등의 전문훈련시설은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가 많아 의용소방대원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소방청의 설명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임무 수행 중 부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4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성과 >

구 분	총 계	화재		구조·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진압 보조	재난활동 보조		화재예방	행사안전 지원	생활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70,137	6,447	1,386	5,712	88,902	34,815	41,872	91,003
인원 (명)	1,286,330	33,539	8,495	27,050	446,142	145,443	198,567	427,094

(자료: 소방청)

<2024년도 의용소방대원 부상 현황>

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교육 훈련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보조		화재예방 업무보조	집회, 공연 등 행사의 안전 지원활동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인정되는 행위	
10	1	1	2	-	-	-	5	1

(자료: 소방청)

다만, 의용소방대 전용 교육훈련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약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¹⁰⁾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국가의 재정 상황, 소방 관련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원은 평소 교육훈련과 임무수행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가 습득되고 교육훈련 목표 자체가 역량강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내용 예시를 법률에 별도로 명시할 이유는 적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제13조제2항의 법문은 소방청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10)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의용소방대원수원을 구축하는데 약 1,500억원(부지구입비 300억원, 건축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자료: 소방청)

■ 의용소방대 정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
-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년 : 65세

■ 소집수당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지원 등 “의용소방대법”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
- ② 그 밖의 교육·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의용소방대 조직

- 조직구성 :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전문 의용소방대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2024.12.3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전문·전담
대수(대)	3,979	1,419	1,306	172	1,082
현원(명)	92,484	35,571	30,742	4,281	21,890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구 분	총 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70,137	6,447	1,386	5,712	88,902	34,815	41,872	91,003
인원 (명)	1,286,330	33,539	8,495	27,050	446,142	145,443	198,567	427,094

○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현황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24년	횟수(회)	126,244	20,973	2,026	384	383	4	659	2,338	99,364	113
	인원(명)	477,037	326,840	58,504	4,482	1,459	9	4,232	50,429	30,965.5	117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23년	횟수(회)	103,178	18,986	2,079	186	367	15	721	1,096	79,686	42
	인원(명)	426,460	303,143	51,326	2,409	1,522	57	2,223	27,851	37,750	179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22년	횟수(회)	45,460	14,372	2,589	352	335	12	607	641	26,552	0
	인원(명)	321,031	229,050	49,190	3,466	1,472	74	1,851	9,376	26,552	0

○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양성강사¹¹⁾ 교육실적

연도	구분	합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심리상담	교관양성	소방안전관리자
24년	강사인원(명)	15,450	4,254	8,568	786	1,164	628
	교육횟수(회)	22,904	6,044	13,532	1,034	2,254	40
	교육인원(명)	546,381	71,855	412,137	1,652	60,737	0
23년	강사인원(명)	23,388	4,557	16,039	1,199	850	743
	교육횟수(회)	24,625	6,277	15,780	1,125	1,369	74
	교육인원(명)	1,155,117	252,758	859,923	1,445	40,372	619
22년	강사인원(명)	19,371	4,386	12,897	831	461	796
	교육횟수(회)	15,072	6,377	7,354	787	513	41
	교육인원(명)	338,453	51,523	285,272	1,054	512	92

11) 의용소방대 양성강사란 의용소방대원 중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심리상담, 교관양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취득을 통해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말함